

## 거창군 한옥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46
----------	----------

제출일자	2015. 6. 19 .
제출자	김종두 의원 외 7명

### 1. 제정이유

-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 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한옥마을 지정·공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적용대상 한옥 및 한옥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라. 한옥의 보존기간, 등록취소, 한옥대장을 규정함(안 제6조 ~제8조)
- 마. 한옥의 신축·개축·수리에 대한 지원신청·결정·기준·변경·완료신고·취소·환수 및 한옥마을 기반시설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4조, 제25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건축법」 제2조, 제21조제1항

#### 나. 예산 조치 : 미편성

#### 다. 집행부의견조회 : 기획감사실, 도시건축과

#### 라. 그 밖의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입법예고 : 2015. 6. 11 . ~ 6. 18 .
- (4)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 거창군 조례 제 46 호

### 거창군 한옥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
3. "한옥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자산을 포함한다)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7. "한옥 외관"이란 한옥의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한다.
8. "한옥 내부"란 한옥의 설비, 부엌, 화장실, 목욕실 등을 말한다.

제3조(한옥마을 지정·공고) 군수는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을 지정·공고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위치한 한옥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건축 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적용된다.

**제5조(등록)** ①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이나 등록예정 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 또는 등록예정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증명서 또는 한옥등록예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한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한옥등록예정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한옥의 건축이 준공되었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한옥의 보존기간)** ①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멸실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① 한옥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요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으로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전에 관한 별표의 한옥수선 등 기준을 위반하고 임의로 한옥을 보수하여 한옥의 외관 등이 한옥의 건축미를 상실하였을 때

**제8조(한옥대장)** 군수는 등록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신축 등으로 등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3. 등록한옥이 증축·개축·재축·수선 등으로 형상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등록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5. 제7조에 따라 한옥의 등록 취소한 경우

**제9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등록한옥의 소유자나 한옥등록 예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경상남도 보조 및 융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신축(증·개축 포함) :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2. 한옥대수선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③ 같은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교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한옥은 한 울타리안의 전체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신축 및 개축의 경우 : 20년
2.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대수선의 경우 : 15년
3.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 : 10년

④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한옥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9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옥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보조대상 한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별표의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합 여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음으로써 제9조제2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가 된 한옥등록 예정자는 한옥신축의 완료신고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기준)** 제9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 :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다만, 한옥신축일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착공신고를 마친 건축주로 한정한다.)
2. 신축한옥의 규모 :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비용지원 한옥규모는 주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경미한 변경)** 군수는 대지면적 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 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 등 경미한 변경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착수신고)** ① 한옥수선 등의 보조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0조제 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4조(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가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계 도서(圖書)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한옥수선 등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한옥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시기)**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 및 신축의 경우에는 한옥등록을 마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건축하거나 보수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전부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한옥등록(예정) 증명서

한옥등록번호	-	등록일자	
건축주			
대지위치			
한옥구분	<input type="checkbox"/> 전통한옥 <input type="checkbox"/> 신한옥 <input type="checkbox"/> 기타한옥		
층수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m <sup>2</sup>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예정) 증명서를 「거창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별지 제3호서식]

한 옥 대 장					
한옥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 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전통한옥 <input type="checkbox"/> 신한옥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한옥				
	대지 면적	m <sup>2</sup>		연 면 적	m <sup>2</sup>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보조·		
			응자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					

【별지 제4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등 록 일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착수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p>「거창군 한옥 지원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주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p>				
첨부서류	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별지 제5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등록번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수선(        )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완료일			공사기간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sup>2</sup>
	건폐율		% 용적률	%
	용도			
「거창군 한옥 지원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bottom: 10px;"> <span>          년          월          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bottom: 10px;"> <span>건축주</span> <span>서명 또는 인</span> </div>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			

[별표]

## 한옥수선 등 기준 (제9조 관련)

### □ 한옥공사 기준

구 분	기 준
신 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증 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 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 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 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 수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li> <li>·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li> <li>·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li> <li>·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li> <li>·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변와)하는 것</li> </ul>
외관수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li> <li>·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li> <li>·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li> </ul>

### □ 한옥수선 등 기준

구 분	수 선 등 기 준	
한옥 외관	한옥의 지 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li> <li>·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li> <li>·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으로 한다.</li> </ul>
	한옥의 외 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li> <li>·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li> <li>·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li> </ul>
	한옥의 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를 사용한다.</li> <li>·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li> </ul>
	한옥의 문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li> </ul>
	한옥의 입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li> <li>·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li> <li>·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li> <li>·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li> </ul>
한옥 내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li> </ul>

# 거창군 한옥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한옥의 신축, 개축, 대수선, 보수에 따른 지원
- 관련조문 : 제9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출	도비					
군비		200	200	200	200	200	1,000
소계(a)		200	200	200	200	200	1,000
세입	국세						
	지방세						
	소계(b)						
총 비용 (a-b)		200	200	200	200	200	1,000

### 3. 관련 의견

-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기 위하여 한옥 신축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이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보조사업비 : 연간 200백만원

작성자 : 전문위원 박완목

## 관계법령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 법 제2조제2호 정의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서 그 밖에 지원 가능한 시설물 종류 등 구체적인 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한옥마을 : 제1호에 해당하는 한옥을 10호 이상 집단적으로 신규 조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리
2. 보조 및 용자 지원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내 사업비의 보조 및 용자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옥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등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계획서 및 대지현황 등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① 영 제18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 11. (생략)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 20. (생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28. (생략)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